예술인 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지원]

예술인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면, 예술인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지원, 파견지원, 심리상담 지원,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와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계약종료로 예술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입주, 출산전후급여, 자녀돌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일상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 1
1. 예술인 지원 알아보기 4
1.1. 예술인 증명받기 4
1.1.1. 예술 활동 증명 4
1.1.2. 예술인패스 신청 5
2. 예술활동 지원받기 7
2.1. 활동준비 지원 7
2.1.1.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지원 7
2.1.3.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8
2.2. 활동 지원 8
2.2.1. 표준계약서의 보급 8
2.2.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11
2.2.3. 예술활동 지원 12
2.2.4. 심리상담 지원 14
2.2.5.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16
3.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20
3.1. 사회보험료 지원 20
3.1.1.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20
3.1.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2
3.1.3.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23
3.2. 재취업 지원 25
3.2.1. 구직급여 지급 25
4. 일상생활 지원받기 28
4.1. 주거 지원 28
4.1.1. 전세자금대출 지원 28
4.1.2. 행복주택 입주 29
4.2. 출산 및 양육지원 31
4.2.1.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31
4.2.2. 자녀돌봄 지원 34
4.3. 생활안정자금 지원 35
4.3.1. 생활비용 지원 35

1. 예술인 지원 알아보기

1.1. 예술인 증명받기

1.1.1. 예술 활동 증명

예술 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임을 증명받으세요.

대상기준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2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8조 참조).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참조).

유효기간

▪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1).

구분	내용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 5년 ▪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5년[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5년[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5년 ▪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의 1. 및 2. 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이 이번에 받는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연장된 기간 포함)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항).

※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예술인패스 신청

예술인패스를 신청하여 공연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할인 혜택 등을 받아보세요.

"예술인패스"란?

▪ "예술인패스"란 예술인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관람료 할인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7쪽).

신청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7쪽).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유효자/만료자 모두, 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인패스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혜택내용

▪ 예술인패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8쪽).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제공
-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 별도 발급
- 매월 할인 혜택 정보 제공(전자우편)

신청방법

▪ 예술인패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8쪽).

> ※ 예술인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패스 누리집(https://artpass.kawf.kr:9443/common/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술활동 지원받기

2.1. 활동준비 지원

2.1.1.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지원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4쪽).

- 현업·예비예술인
- 예술사업자
-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 예술 관련 기관·협·단체, 사업체 등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 교육내용 및 각각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4~25쪽).

구분	교육내용	신청방법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단체 수강)	▪ 예술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 접속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찾아가는 교육' 신청
주제 특화 교육(특강, 개인 수강)	▪ [예술 계약] 예술 계약의 기본 개념, 분야별 계약 경향 및 유형,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등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현황 및 사례, 예방방안, 피해자 구제방안 등	▪ 상세일정, 신청방법 등은 개최 시기에 맞추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동영상 교육(개인 수강)	▪ 예술 계약의 이해,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온라인을 통한 예술인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 접속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강좌신청

※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3.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아 예술활동을 준비해 보세요.

지원제도

▪ 예술인은 경제적인 이유 등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2쪽).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2쪽).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배점제 미적용)
참여제한	▪ 전년도에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이번 연도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격년제)
지원인원	▪ 18,333명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3쪽).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활동 지원

2.2.1. 표준계약서의 보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의 사용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 참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2항 참조).

▪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의 체결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

계약서 명시사항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3항).

▪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함)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4항 및 제2조제4호).

계약서의 보존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신고

▪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신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 서면계약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서면계약 위반 유형
1. 서면계약서 미작성: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서면계약서 내용미비: 계약서 명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3. 서면계약서 미교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서면계약서 미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및 상담방법

▪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3쪽).

구분	내용
서면계약 상담 및 위반신고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 전자우편: sinmungo@kawf.kr ▪ 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서면계약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서면계약 위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은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장애예술인의 범위

▪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위의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 창작물의 종류

▪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 공예품
-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우선구매 해당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창작물 우선구매 금액

▪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단,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우선구매의 중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2.2.3. 예술활동 지원

기업·기관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은 예술로 사업(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진예술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4쪽 참조).

구분	참여제한 조건
협업·기획·지역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전년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협업사업	▪ 예술로 사업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자 ※ 기획사업은 연속참여제한 미적용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기관 및 예술인과의 파트너십 의지 및 협업활동에 대한 수용성, 적극적

지원·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도 예술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4쪽).

참여제한 조건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 다만,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허용됨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단순교육 형태) ▪ 다른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예술로 협업사업

▪ 예술로 협업사업은 심의를 통해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5쪽).

▪ 예술로 협업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5쪽).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월 140만원(세액공제 전)	▪ 총 600만원 ☞ 활동기간(5개월): 월 12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예술로 기획사업

▪ 예술로 기획사업은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단위 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7쪽).

▪ 예술로 기획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7쪽).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60만원 ☞ 활동기간(6개월): 격월 320만원(세액공제 전)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격월 28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 예술로 지역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이 심의를 통해 기업·기관 및 예술인을 선정한 후, 매칭을 진행하여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9쪽).

▪ 예술로 지역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9쪽).

지원규모 및 내용
▪ 운영기관별 예술인 최소 20명 ~ 최대 50명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 운영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산재보험료 포함) 지원 ▪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간담회 및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지원

※ 예술로사업 신청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4. 심리상담 지원

예술활동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및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단체 등은 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8쪽).

구분	내용
개인 심리상담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활동 과정 중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마지막 상담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집단 심리상담	▪ 사후관리 집단상담: 개인 심리상담 종료 후 집단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협·단체 ※ 집단 심리상담 신청 시 재단 사전문의 필수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8쪽).

▹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1:1 심리상담(대면 및 비대면) 최대 12회

√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심리검사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에서 진행

※ 상담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며, 교통비 등 개인부담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8쪽).

▸ 집단 심리상담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우울, 불안 및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및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 스트레스 대처훈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 심리건강 프로그램, 마음챙김 워크숍 등

신청방법

▪ 예술인 심리상담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9쪽).

구분	내용
개인 심리상담	▪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권익보호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동의 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심리상담 참여 동의 필수 ▪ 신청 내역 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상담 진행: 접수 마감 후 심리상담 기관 연계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 신청접수(1차) 및 상담 준수사항 응답(2차)이 모두 완료되어야 개인 심리상담 진행 가능
집단 심리상담	▪ 전자우편: counseling@kawf.kr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전화: 02-3668-0200

※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5.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술인 신문고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대상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제3항 참조 및 제7조제2항 참조).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1.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및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및 예술지원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참조)
3.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4.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5.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등 예술인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참조)

신고방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참조, 제3항 참조 및 제16조제2항 참조).

> ※ **성희롱·성폭력이란?**
>
> -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1.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 2.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신고방법

▪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지원내용

▪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피해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7쪽).

구분	내용
법률지원	▪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 성폭력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심급별 지원, 1인당 구조비용 최대 한도 내 지원)
심리상담 지원	▪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안내연계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불이익조치”란?**

- “불이익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1.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및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및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및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및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및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및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예술 활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9쪽).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9쪽).

- 예술 분야에 특화된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변호사) 상담 제공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및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지원
- 계약서 조항 검토 및 해석,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등 문화예술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및 그 밖의 서류대리 작성 요청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9쪽).

신청 및 상담방법

▪ 신청 및 상담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9쪽).

구분	내용
온라인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상담> 법률상담 ▪ 전자우편: lawadvice@kawf.kr
전화	▪ 상담전화: 02-3668-0200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방문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상담실(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 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3.1. 사회보험료 지원

3.1.1.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혜택

▪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예술인고용보험).

> ※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구직급여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출산전후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상생활 지원받기-출산 및 양육지원-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제77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적용제외 대상

▪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예술인 중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위의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보험료의 상한액

▪ 예술인이 납부하는 월별보험료의 상한액은 499,190원이고, 연간보험료의 상한액은 5,990,280원입니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1호).

가입방법 및 납부절차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입)와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의 고유업무로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신고·납부안내-신고·납부개요>

※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www.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및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 다음의 지원내용에 따라 예술인 및 사업주는 각각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지원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지원수준	▪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 예술인 피보험자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제외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신청방법	▪ 전자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서면신청(방문, 우편, FAX)

※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 국내 거주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지역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인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우리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승인 받은 예술인(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 표준계약 체결: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 표준계약 교육 이수: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교육)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표준계약(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를 첨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 다만,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한정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유형에 한정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해당 예술활동증명 이력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금 상한액은 예술인 1명당 1개월 지원 기준 월 37,950원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3쪽).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기간	지원금액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최대 12개월	납부보험료의 50% *월 상한액 37,950원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일반(장기)계약**		
	단기계약	최대 6개월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최대 3개월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료 조회시점 기준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
** 단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 체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일반, 장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 체결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지원범위

▪ 전년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부터 해당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까지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신청방법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4쪽).

구분	내용
신청방법	▪ 접수기간: 사업공고일 ~ 2026년 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우선 지원) ▪ 접수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납부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5쪽).

구분	신청자격
보험가입	▪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보험료 지원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 활동 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동시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5쪽).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
<tr><td>산재보험
사무대행</td><td>▪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산재 보상 청구 제외)</td></tr>
<tr><td>보험료
지원</td><td>▪ 등급별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td></tr>
<tr><td>산재 보상
관련 상담</td><td>▪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td></tr>
<tr><td>월 보험료 및
재단 지원금</td><td>▪ 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등급/월 보험료 선택 가능
<table>
<tr><th rowspan="2">등급
(2026)</th><th rowspan="2">기준보수액
(1개월)</th><th colspan="2">월 보험료(원)</th><th colspan="2">본인 부담금(원)</th></tr>
<tr><th>창작/실연/기술지원
(6.6/1000)</th><th>일부 기획직군*
(8.6/1000)</th><th>창작/실연/기술지원
(6.6/1000)</th><th>일부 기획직군*
(8.6/1000)</th></tr>
<tr><td>1등급</td><td>2,511,200원</td><td>16,570원</td><td>21,590원</td><td>8,290원</td><td>10,800원</td></tr>
<tr><td>2등급</td><td>3,024,800원</td><td>19,960원</td><td>26,010원</td><td>9,980원</td><td>13,010원</td></tr>
<tr><td>3등급</td><td>3,538,390원</td><td>23,350원</td><td>30,430원</td><td>11,680원</td><td>15,220원</td></tr>
<tr><td>4등급</td><td>4,051,990원</td><td>26,740원</td><td>34,840원</td><td>13,370원</td><td>17,420원</td></tr>
<tr><td>5등급</td><td>4,565,590원</td><td>30,130원</td><td>39,260원</td><td>15,070원</td><td>19,630원</td></tr>
<tr><td>6등급</td><td>5,079,180원</td><td>33,520원</td><td>43,680원</td><td>16,760원</td><td>21,840원</td></tr>
<tr><td>7등급</td><td>5,592,780원</td><td>36,910원</td><td>48,090원</td><td>18,460원</td><td>24,050원</td></tr>
<tr><td>8등급</td><td>6,106,380원</td><td>40,300원</td><td>52,510원</td><td>20,150원</td><td>26,260원</td></tr>
<tr><td>9등급</td><td>6,619,970원</td><td>43,690원</td><td>56,930원</td><td>21,850원</td><td>28,470원</td></tr>
<tr><td>10등급</td><td>7,133,570원</td><td>47,080원</td><td>61,340원</td><td>23,540원</td><td>30,670원</td></tr>
<tr><td>11등급</td><td>7,647,170원</td><td>50,470원</td><td>65,760원</td><td>25,240원</td><td>32,880원</td></tr>
<tr><td>12등급</td><td>8,160,761원</td><td>53,860원</td><td>70,180원</td><td>26,930원</td><td>35,090원</td></tr>
</table>
※ 대부분의 예술 직군(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은 6.6/1000 요율 적용. 일부 기획 직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받으며, 적용 사업종류는 업무내용을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td></tr>
</table>

신청방법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6쪽).

구분	신청방법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ci.kawf.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통장사본(보험료 환급용)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https://wci.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재취업 지원

3.2.1.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지급요건

▪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58조 참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하며, 1일 기준(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3항 단서·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 및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제1호).

지급기간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함)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참조).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제49조제1항 참조 및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예술인의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며,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 등에는 대기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6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5항 참조).

급여의 지급

▪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지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예술인고용보험-급여신청안내-구직급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의 감액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 제80조제1호 참조 및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또는 노무제공계약(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1.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16,512원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16,512원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급여의 반환 등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 추가 징수
-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또는 추가 징수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단, 낼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구직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합니다. 단,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구직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 예술인 구직급여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일상생활 지원받기

4.1. 주거 지원

4.1.1. 전세자금대출 지원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으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신진예술인은 제외)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0~51쪽 참조).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구분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고 1억 2천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이율 1.95%(2년간 고정금리, 연체 시 3% 가산)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융자요건 및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구분	내용
융자요건	1. 대상 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오피스텔, 단독주택 2. 매매시세 평가 기준(참고사항) • 아파트: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기준 최근 시세의 100% 반영 • 빌라(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 • 오피스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 3. 유의사항 • 매매시세 평가 기준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융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신청기한	▪ 상시 접수(2026년 한시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조건

▪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구분	제한조건
임차인 (신청자)	①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 ③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 ④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⑤ 재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보유자(완납 후 신청 가능) 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연 36,925,027원 이하 ⑦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해당 요건은 융자금 지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 ⑧ 공동임차인 형태의 계약은 신청 불가
임대인	①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불가) ② 공공임대사업자(민간 법인은 불가)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닐 것
임차 주택	① 개별 등기된 주택으로 전세 계약만 가능 ※ 월세 및 반전세는 불가,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능 ②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③ 전세보증금에 따른 질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질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 ④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신청방법

▪ 전세자금 융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 예술인도 입주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입주자격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13조제3항].

구분	내용
기본사항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자산관련요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입주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입주신청절차

▪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임대절차>

※ 행복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출산 및 양육지원

4.2.1.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1항 본문).

지급요건

▪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구분	내용
1.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봄)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150만원 ▪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지급기간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구분	내용
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3. 위의 1, 2번 외의 경우: 90일
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지급수준

▪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간에 대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 참조).

▪ 출산전후급여 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구분	지급수준
상한액	▪ 90일에 대해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해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에 대해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해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해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대해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해 220만원
하한액	▪ 90일에 대해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에 대해 총 20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해 2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에 대해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신청방법

▪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2항 참조, 별지

제105호의3서식, 별지 제107호의3서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제4호).

구분	제출서류
출산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또는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또는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3항).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4항).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5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6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수급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의 감액

▪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4항 및 제100조 참조).

-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 등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급여의 반환 등

▪ 지급된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구직급여의 반환 등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5항 전단).

> ※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구직급여의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구직급여의 반환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구직급여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https://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2. 자녀돌봄 지원

24개월~10세의 자녀가 있다면,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4개월~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6쪽).

※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세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6쪽).

이용센터

▪ 다음의 센터에서 예술인 자녀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6쪽).

구분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특징	▪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주택에 위치 ▪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 제공	▪ 아이들이 집처럼 뛰어놀 수 있는 주택 ▪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와 간식 제공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이화동 4-1)	▪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망원동 473-30)
시설규모	▪ 28평(방2, 주방1, 화장실1)	▪ 54평(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운영시간	▪ 월: 휴무 ▪ 화~금: 13시~22시 ▪ 토: 11시~22시 ▪ 일: 11시~20시 ▪ 필요시 주말 9시~11시, 공휴일 11시~13시, 22시~23시, 화~토 22시~23시 이용 가능(다만, 2일 전 사전예약 필수)	▪ 월: 휴무 ▪ 화~일: 11시~20시 ▪ 필요시 9시~11시, 20시~22시 이용 가능(다만, 2일 전 사전 예약 필수)
전화	▪ 02-741-0347	▪ 02-3143-1919
온라인	▪ http://cafe.daum.net/bandicare	▪ http://cafe.naver.com/yebomcenter

이용방법

▪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6쪽).

-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
-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루 전까지 예약, 전일이 휴관일이거나 주말 및 공휴일 돌봄의 경우 2일 전까지 운영시간 내 전화 및 방문 예약)
- 24~48개월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1일 전 예약 필수
- 긴급한 경우, 10~13세(초등학생)인 형제자매를 동반할 경우 사전 문의 필수

>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 생활안정자금 지원

4.3.1. 생활비용 지원

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0쪽).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구분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금리	▪ 2.5%(분기별 변동, 연체 시 3% 가산)
기간	▪ 3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 상시 접수(온라인 신청)

▪ 대출유형 및 융자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0쪽).

대출유형	융자요건	신청기한
의료비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다.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정함 ※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융자금 승인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정함	▪ 진단서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 배우자, 자녀,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긴급생활자금	▪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에 필요한 비용	

신청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3쪽).

구분	제한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①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 ② 재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보유자 (배우자 포함, 완납 후 신청 가능) ③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사람 ④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 ⑤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1쪽).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38~0239)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